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개정 2025. 10.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인력·시설·장비 현황

(앞쪽)

1. 인력현황

직종	과목	인원수(명)	직종	인원수(명)
전문의	산부인과		임상병리사	
	소아청소년과		방사선사	
	마취통증의학과		약무	
간호사			원무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행정	
수어통역사			기타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는 간호사(권장), 사회복지사 등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수어 통역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시설 현황

가. 주요시설

구분	주요시설	실수	내용	총족여부 (0, X)
외래	외래진료실		▪ 환자 공간 내 전동휠체어 이동 및 회전 가능하도록 최소 1.4미터×1.4미터 공간 확보 ▪ 진찰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진찰대 및 가구 배치	
	처치실 (내진실, 초음파실)		▪ 탈의 가능하도록 별도 공간 확보 및 시선 차단용 커튼 또는 파티션 설치(또는 별도 탈의실 설치) ▪ 환자 이동 및 처치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실과 처치실은 인접 배치 ▪ 다만, 충분한 면적(필요장비 배치 및 휠체어 회전공간 확보)이 마련된 경우에는 진료실·처치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음	
분만부	진통실		▪ 침대 및 분만대 양옆으로 의료진 및 환자 접근 가능하도록 장비 및 가구 배치 ※ 분만실은 수술실과 연계체계 구축	
	분만/수술실			
	회복실			
	보호자대기			
병동부	입원실(1인실)		▪ 모자동실 권장(다만,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필수) ※ 단, 산모의 요구나 집중치료가 필요한 경우 1인실 외 다인실, 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등 다른 시설 입실도 가능	
	화장실		▪ 입원실 내에 화장실 장애인이 사용 가능한 화장실 설치(휠체어 회전 가능, 출입구 단차 제거 등) ▪ 다만, 병원 상황에 따라 입원실 내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원실과 근접한 공용화장실로 지정 가능 ▪ 화장실 내 좌욕기 설치 권장 ▪ 화장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3호와 같음	
신생아실	신생아실		▪ 분만부 근접배치, 산과병실에서의 접근동선 고려 ▪ 준비 및 조유 공간 설치 ▪ 보호자 면회 및 관찰 가능한 공간 및 안전 유리창 설치	
	수유실		▪ 휠체어로 이용 가능한 수유실 설치 권장(다만, 모자동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 필수)	
공통	이동통로	-	▪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설치된 층 또는 구역 내의 이동통로는 관련 설비 및 가구설치 공간을 제외한 통로의 최소 유효폭을 1.2미터 이상 확보	

나. 편의시설

종류	설치기준	충족여부 (0, X)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주 출입구 접근로 유효폭, 기울기 등 기준 나)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접근로 유효폭, 기울기 등 기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기준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3)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 기준 나) 부출입구를 이용하는 경우 통로와 단차가 있는 경우 설치 기준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 내 출입문 중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출입문의 설치 기준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부착물 설치 기준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의 층간 이동 시설(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기준 나)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등의 층간 이동 시설(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설치 기준	
7)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화장실 구조, 바닥 재질, 장애인용 대변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설치 기준	
8) 점자블록	건축물 주출입구, 도로, 교통시설 연결보도에 설치하는 기준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등 설치 기준 나) 청각장애인용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전자문자안내설비 설치 기준	
10)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용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경보설비 등 설치 기준 나) 추락 방지 난간 등 설치 기준	

다. 권장시설

종류	설치기준	충족여부 (0, X)
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의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설치 기준	
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의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설치 기준	
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장애인들이 이용 가능한 형태 규격 설치 기준	
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 규격 및 부착물 설치 기준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7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0/X로 표기합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3. 장비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 조 번호	제 조 국명	제 조 연도	구 입 연 도	비 고

※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예시

일련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 조 번호	제 조 국명	제 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1	휠체어 체중계	1	WCS-200	제시불가	Korea	2014	2014	
2	장애인 촬영용 X-ray	1	CXD-RD85D2	RD85D1 30 ****	Korea	2013	2013	디텍터 높이 지상 55cm 가능